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제 1179 호】

2015년 05월 22일 (금)

선람	기 관 의 장

회 람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31호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32호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33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8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5-144호	도로명주소 고시	71
고양시 고시 제2015-1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26호선(멱절마을 도로))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77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5-804호	2015년 방범안전망(CCTV)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79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 - 31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5 월 22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회계 간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특별회계의 전용금지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년 6월 11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마이스산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마이스산업과 전시컨벤션사업팀(031-8075-351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회계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고양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마이스산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마이스산업과장 윤 희 성
	팀 장 성 명	전시컨벤션사업팀장 최 규 형
	담 당 자 성명·전화	방 은 호 (031-8075-351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회계간의 자금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영에 일시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자금을 전입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입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 (회계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고양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삭 제>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 - 32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5 월 22 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고자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부터 안 제31조까지)

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24조)

다. 종전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소비자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함(안 제25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문구, 띄어쓰기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년 6 월 11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테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지역경제과 노사문화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지역경제과 노사문화팀(031-8075-356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4. 그 밖의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6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주무관청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을 조사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조사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물가조사요원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계몽·캠페인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절차, 정산·감독 및 방법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사업자의 책무

제11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상품의 회수, 제조 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성분·성능·가격·용도·사용방법·제조연월일·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16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접수) 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시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 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자료의 검사·제출 요구) ①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소비자피해 처리절차) 시장이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소비자피해조정)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조사·권고 및 공표

제21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와 어긋나게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해당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이 제17조에 따른 시험·검사나 제21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7조에 따른 검사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조사결과에서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 구제절차에 따른 처리·조정 등에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6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제24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 실·국장, 도시주택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2.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3. 경제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4. 시민사회단체 대표
5. 소비자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언론인 등
6. 그 밖의 경제분야에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4. 시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일 경우에는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된 것으로 본다.

소관과		지역경제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지역경제과장 이 정 진
	팀 장 성 명	노사문화팀장 박 광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장 효 경 (031-8075-3562)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시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자재(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	**제2조(정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신 설>	4. “사업자단체“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4.고양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과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현 행	개 정 안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6. 소비생활을 위하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신 설>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현 행	개 정 안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그 밖의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위해방지)** ①.....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② 물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비자의수거·파기.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중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제7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기본생활 필수품으로

현 행	개 정 안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집하고 안정을 ②제1항을 위하여.....관계기관 · 단체 ·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을 조사하게 하는 등.....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 ·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조사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물가조사요원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발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동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절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등 공정	<삭 제>

현 행	개 정 안
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비자보호교육 등) ①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등 계몽활동과 교육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종합센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타 내에는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 기구를 둔다.	**제8조(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①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 제>
제11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 략)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4. (생 략)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각 호의 1. (현행과 같음) 2. 물품 등의 3.~4. (현행과 같음)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②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	<삭 제>

현 행	개 정 안
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및 소비자단체·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 하는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소비자상담실의 유급상담원은 상담실장 1인과 10인이내의 전문상담원으로 하고, 상담실장과 전문상담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그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0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②지급기준·절차, 정산·감독 및 방법 등은「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험·검사 의뢰 및 시설 조치) ①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②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하여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 제1항에 국가가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도모키 위하여 법제8조에 규정한 상품의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성분, 성능, 가격, 용도, 사용방법, 제조년월일, 유효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상품의 표시)**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른 영향·성분·성능·가격·용도·사용방법·제조년월일·유효기간 등 표시하여
제17조(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생	**제13조(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현행

현 행	개 정 안
략)	과 같음)
제18조(계량의 적정화) ① ~ ② (생략)	제14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다.	<삭 제>
제20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법 제11조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제21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정성·표시·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 통신	제16조(소비자피해구제신청·접수) ① 물품 등의 한국소비자원, 시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 그 밖의 통신

현 행	개 정 안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③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 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22조(자료의 검사·제출요구) (생 략)	**제17조(자료의 검사·제출요구)** (현행과 같음)
제23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4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기한) 시장이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소비자피해 처리절차)**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	**제19조(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현 행	개 정 안
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받은 시장 어느 한쪽이 제기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26조(소비자피해 조정) ①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소비자피해 조정)** ①피해구제 신청 중.....한국소비자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비자단체는한국소비자원
제27조 (소비자소송의 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제21조(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조례와 어긋나게

현 행	개 정 안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은 제22조에 의한 시험·검사나 제28조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이 제17조에 따른 시험·검사나 제21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30조(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22조에 의한 검사결과와 제28조에 의한 조사결과 소비자의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 의한 처리·조정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제28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거 도내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원 또는 경기도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 성능 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이 정한 시험·검사를 거친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권고 및 공표) ①제17조에 따른 검사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조사결과에서 소비자의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 구제절차에 따른 처리·조정 등에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삭 제>
제31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24조(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운영)

현 행	개 정 안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및 물가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시장은 소비자 권익증진 및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하기.....소비자정책위원회.....
제3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위원회 구성)** 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 담당 실·국장, 도시주택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민생경제국장, 교통안전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등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2.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3. 경제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4. 시민사회단체 대표 5. 소비자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언론인 등 6. 그 밖의 경제분야에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과장이 되

현 행	개 정 안
	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신 설>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 조정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조정대상 요금중 1년이 경과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제2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2.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4. 시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4호의요금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해당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에는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있다.	
제34조(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28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②. ~ ③.(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 (실무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제화산업본부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생 략) ⑥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36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생	제29조(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현행과

현 행	개 정 안
략)	같음)
제3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실비보상)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제38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시장은 사업자가 제6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0조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39조(준용)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생 략)	제32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참고 1 **관계법령발췌서**

□ 『소비자기본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8조(위해의 방지) ①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물품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물품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광고의 기준)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용도·성분·성능·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사·권고·공표 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
6.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7. 그 밖에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

고양시 입법예고 제2015 - 33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 및 상인회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구역 명시(안 제3조)

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기준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전통시장의 기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라. 상권활성화구역 세부사항 명시(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마.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세부사항 명시(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

바.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예산 지원사항 명시(안 제20조부터 안 제27조까지)

사.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안 제28조부터 안 제29조까지)

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등 세부사항 명시(안 제30조부터 안 제40조까지)

자. 과태료 부과·징수사항 명시(안 제41조부터 안 제46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년 6 월 11 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테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지역경제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지역경제과 중소상공인팀(031-8075-355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양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고양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구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 시설물 “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고양시(이하 ” 시 “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고양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8. “상인조직”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양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전통시장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양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양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및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고양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고양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시설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의 거리 100미터까지를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고양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전통시장의 변경신청) ① 상인조직·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고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4. 전통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양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고양시장은 전통시장이 영 제2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하나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한 범위로 하며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고양시장은 법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고양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 고양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7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고양시장은 제외한다)는 고양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양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9조(임시시장의 신고취소) 고양시장은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0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과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 점포마다 1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1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고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상인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정관을 작성하여

고양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고양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고양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고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고양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종교활동 또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3.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 하였거나, 전통시장이 영 제2조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양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고양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양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등 시장에 관한 자료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고양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양시장은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양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고양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0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시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양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치비용의 90퍼센트를 이상이 정부 및 시 보조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시

설물로서 도로·토지 및 건축물(상인과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고양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및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정부·시·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양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1조(시설물의 존속기한) 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존속기한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이하 “뉴타운지구”라 한다)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비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의 건축물과 주차장(평면형·타원형·건물형을 말한다)의 존속기한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공공목적, 정비사업지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시점까지로 한다.

제32조(시설물의 관리) ① 고양시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지방재정법」및「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

리하여야 한다.

③ 고양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위탁관리) ① 고양시장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고양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양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고양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의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제36조(지도・감독) ① 고양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고양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고양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위탁의 취소 등) 고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8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수탁자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변상의 책임 등) ①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40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고양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41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제2항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고양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고양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고양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양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3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고양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4조(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고양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고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양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

항은「고양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또한, 등록된 인정시장 및 상인회는 이 조례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고양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6조제1항제5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②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제60조의2 제목 및 본문, 제61조제4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③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7호타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소관 담당과		지역경제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지역경제과장 이 정 진
	팀 장 성 명	중소상공인팀장 김 종 구
	담당자 전 화	신 형 식 (031-8075-3551)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 각 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과태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수입일 부 인

고양시 징수관(인)

A80 × 160㎜
신문용지 54kg/㎡

영수필통지서(1)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고양시 징수관(인)

A80 × 160㎜
신문용지 54kg/㎡

영수필통지서(2)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고양시 금고 귀하

A80 × 160㎜
신문용지 54kg/㎡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수입일 부 인

○○은행 ○○지점

A80 × 160㎜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 각 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하겠습니다.

. . .

고양시 징수관(인)

수입일 부 인

A80×160㎜
신문용지 54kg/㎡

영수필통지서(1)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은행 ○○지점

고양시 징수관(인)

수입일 부 인

A80×160㎜
신문용지 54kg/㎡

영수필통지서(2)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은행 ○○지점

고양시 금고 귀하

수입일 부 인

A80×160㎜
신문용지 54kg/㎡

영 수 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부의무자	단 체 명
	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A80×160㎜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성 명</td><td colspan="2">(한자)</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단 체 명</td><td colspan="5"></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과 태 료
처 분 내 역</td><td>부과관청</td><td colspan="2"></td><td>납부통지서
번 호</td><td></td></tr>
<tr><td>통지일자</td><td colspan="2"></td><td>과태료금액</td><td></td></tr>
<tr><td>과태료처분사유</td><td colspan="4"></td></tr>
<tr><td>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td></tr>
<tr><td>구 비 서 류</td><td colspan="5">없 음</td></tr>
</table>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와 관련입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 1.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임시시장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단

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

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⑨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시장관리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장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

는 업무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나 상인조직
2.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단체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2.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
2.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제3조(상인조직)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0.6.28.>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제8조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지원한도 등)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권활성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②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 및 상점가 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4. 시장 및 상점가가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시장·상점가 및 시장·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상점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총회 회의록
3. 규약 또는 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④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6.30.>

⑤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 또는 표준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⑦제3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규약 또는 정관
3. 시장관리 운영계획
②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과 그 밖에 임시시장의 운영·관리에 관한사항은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시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참고 2 타 지자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제정일자
1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14.10.30
2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2014.10. 6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12.10.10
4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11. 4.15
5	창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2010. 7. 1
6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09.10. 5
7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09. 1. 9
8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08.10.24
9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08. 6.30
10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08. 5. 7
11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08. 3.20
12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07.12.31
13	파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07.12.28
14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07.12.28
15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2007.12.27
16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07.12.13
17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07.11.13
18	안양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2007. 6.21
19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06. 1.13

고양시 고시 제2015 - 14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에 의거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174-30 외 3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5. 22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 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48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174-30	20150522	20090911	고양시의 대표적인 도로로서 고양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37-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2로 19-3	20150522	20131108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4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안길 24-1	20150522	20131022	고유지명인 도래울 명칭 활용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48-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1로2길 21-11	20150522	2012060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148, 255, 22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71	20150522	20090710	북한산 지명 인용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54-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1길 42	20150522	2012060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58-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342-1	20150522	20000727	서삼릉의 능호를 도로명에 적용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31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길 97-44	20150522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1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68	20150522	20120601	옛 지명인 세수리마을과 솔개마을에서 한자씩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48-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솔밭2길 19	20150522	20120601	소나무가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1-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도3길 50	20150522	20110715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1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60-43	20150522	20090710	지명인용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8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16번길 51-26	20150522	20100126	행주산성로 시점에서 1160m에 위치하 도로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85-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306	20150522	20090824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82-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71	20150522	20090911	군부대 인근의 도로로 화랑의 높은 기개를 도로명에 적용
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227-194, 1227-17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620번길 52-27	20150522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6200m에 위치한 도로
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621-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867번길 41-12	20150522	20120312	고봉로 시점에서 8670m에 위치한 도로
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808-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197번길 181	20150522	20100126	동국로 시점에서 1970m에 위치한 도로

1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3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 36	20150522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32-1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 40-10	20150522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32-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 40-12	20150522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32-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 40-2	20150522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32-2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 40-6	20150522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46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로 178-7	20150522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65-8, 965-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332-17	20150522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381, 38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166번길 66-2	20150522	20100126	장진천길 시점에서 1660m에 위치한 도로
2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76	20150522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926-6, 926-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736-59	20150522	20090710	고양시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
2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39-2, 159-3, 182-2, 181-4, 159-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269	20150522	20090911	행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57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573-9, 573-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43번길 17-1	2015.5.22.	건물합병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6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3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2로 13-1	2015.5.22.	관련지번변경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 사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573-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 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43번길 17-1	2015.5.22.	건물 합병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573-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43번길 17-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애니골길43번길 17-1	2015.5.22.	건물 합병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멸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166번길 66-2	2015.5.22.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12.23.	설문동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로 178-7	2015.5.22.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1.7.29.	산황동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 36	2015.5.22.	신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	2012.4.24.	문봉동	

고양시 고시 제2015-1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26호선(멱절마을 도로))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일산서구 법곳동 263-5번지 일원에 추진 예정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226호선(멱절마을 도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되어 같은법 제91조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44)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2일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 작성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263-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소로1-226호선(멱절마을 도로)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모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소로	1	226	10~12.0	1,818	법곳동 209-13	장항동 660-73	
시행	소로	3	501	11.5	628	법곳동 233-4	법곳동 40-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일산서구 중앙로 1542
 - 성명 : 일산서구청장(건설과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5.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과 동일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일련번호	소 재 지			공부상 면적	실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지목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1	법곳동	233-4	도	3491.00	89.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경기도				
2	"	234-14	도	5602.00	23.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3		726-20	도	198.00	126.05	세종특별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4		209-1	도	3753.00	215.2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가)	경기도				
5		209-9	잡	235.00	5.1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1107 후곡마을 1204-701	박호운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159 112동 1604호(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아파트	강봉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처분	
6		263-5	도	3285.00	3285.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7		205-2	잡	760.00	2.22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70, 514동2404호	백현종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구월동지점)	씨티은행	근저당	
8		205-1	잡	364.00	2.39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70, 514동2404호	백현종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구월동지점)	씨티은행	근저당	
9		205	잡	816.00	26.20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70, 514동2404호	백현종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구월동지점)	씨티은행	근저당	
10		205-4	잡	99.00	0.77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56, 202동 804호(대화동 성저마을)	이재룡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김포장기지점)	신한은행	근저당	
11		205-7	도	1.00	1.00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70, 514동2404호	백현종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구월동지점)	씨티은행	근저당	
12		265-3	대	1620.00	4.71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75, 708동 1103호(백석동 백송마을)	이종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종로5가지점)	우리은행	근저당	
13		268-6	잡	5098.00	850.0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14		268-10	도	335.00	48.49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15		213-6	구	274.00	38.4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16		180-14	잡	14947.00	1302.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17		213-7	구	220.00	55.6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18		179-7	도	64.00	59.6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19		179-6	잡	4.00	1.3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20		213-8	구	35.00	16.8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21		740-7	제	4329.00	267.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합 계				45,530	6,421.71						

고양시 공고 제2015-804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사 업 명	2015년 방범안전망(CCTV) 확장사업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2015년 방범용 CCTV 구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

방범용 CCTV 설치지역

연번	관리번호	사업구분	설치지역		카메라대수
			구주소	신주소	
		합 계	53개소		244대
		방범취약지역	30개소		135대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		47대
		도시공원	13개소		62대
1	고양-A-262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도내동 432-2		5대
2	고양-A-263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동산동 76-75	덕양구 고양대로1954번길 5	4대
3	고양-A-264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벽제동 562-3	덕양구 보광로 194	4대
4	고양-A-265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선유동 523-3		4대
5	고양-A-266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내유동 436-25	덕양구 통일로1154번길 16-3	5대
6	고양-A-267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내유동 781-1	덕양구 명봉산로6번길 23	4대
7	고양-A-268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덕은동 138-2	덕양구 대터2로 6	4대
8	고양-A-269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성사동 419-6	덕양구 호국로812번길 111	5대
9	고양-A-270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삼송동 143-28	덕양구 삼송로136번길 38	5대
10	고양-A-271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주교동 582-10	덕양구 원당로69번길 34	5대
11	고양-A-272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행신동 722-13	덕양구 무원로 36번길 25	4대
12	고양-A-273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행신동 1068	덕양구 서정마을로 46	5대
13	고양-A-274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토당동 833-8	덕양구 토당로 168번길 7-28	5대
14	고양-A-275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토당동 840-3	덕양구 지도로 105	5대
15	고양-A-276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덕은동 12	덕양구 중앙로 62번길 32	4대
16	고양-A-277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화정동 919-5	덕양구 은빛로17번길 21-22	4대
17	고양-A-278	방범취약지역	덕양구 화정동 864	덕양구 화중로 197	5대
18	일산-A-294	방범취약지역	일산동구 정발산동 1244	일산동구 일산로428번길 58	4대
19	일산-A-295	방범취약지역	일산동구 정발산동 1127-9	일산동구 산두로229번길 36-1	5대
20	일산-A-296	방범취약지역	일산동구 풍동 589-10	일산동구 애니골길 47	5대
21	일산-A-297	방범취약지역	일산동구 풍동 1122	일산동구 애니골길 5	4대
22	일산-A-298	방범취약지역	일산동구 백석동 1450	일산동구 강촌로 26번길 16-1	5대
23	일산-A-299	방범취약지역	일산동구 백석동 1435-6	일산동구 호수로430번길 41-8	4대
24	일산-A-300	방범취약지역	일산서구 일산동 637-59		5대
25	일산-A-301	방범취약지역	일산서구 일산동 587-23	일산서구 일중로79번길 12-2	5대
26	일산-A-302	방범취약지역	일산서구 대화동 2123-4	일산서구 대산로212번길 29	4대
27	일산-A-303	방범취약지역	일산서구 대화동 1975-11	일산서구 대화로 54	4대
28	일산-A-304	방범취약지역	일산서구 덕이동 855-8	일산서구 덕이로 173	5대
29	일산-A-305	방범취약지역	일산서구 구산동 1867	일산서구 이산포길 364-7	4대
30	일산-A-306	방범취약지역	일산동구 식사동 184-3		4대
31	고양-A-279	어린이보호구역	덕양구 고양동 8-4	덕양구 혜음로 85	5대
32	고양-A-280	어린이보호구역	덕양구 행신동 747	덕양구 용현로 47	4대
33	고양-A-281	어린이보호구역	덕양구 행신동 963	덕양구 중앙로468번길 85	5대
34	고양-A-282	어린이보호구역	덕양구 화정동 959	덕양구 은빛로 78	4대
35	일산-A-307	어린이보호구역	일산동구 풍동 1284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51	5대
36	일산-A-308	어린이보호구역	일산동구 마두동 808	일산동구 일산로 341	5대
37	일산-A-309	어린이보호구역	일산서구 일산동 632	일산서구 고양대로 686-2	5대
38	일산-A-310	어린이보호구역	일산서구 탄현동 41-1	일산서구 탄현로 42	5대
39	일산-A-311	어린이보호구역	일산서구 주엽동 116	일산서구 주엽로 118	5대
40	일산-A-312	어린이보호구역	일산서구 가좌동 1099	일산서구 가좌2로 31	4대
41	고양-A-283	도시공원	덕양구 도내동 417-2		5대
42	고양-A-284	도시공원	덕양구 도내동 48-1		5대

43	고양-A-285	도시공원	덕양구 도내동 948-127		5대
44	고양-A-286	도시공원	덕양구 도내동 58-1		5대
45	고양-A-287	도시공원	덕양구 성사동 551	덕양구 호국로876	5대
46	고양-A-288	도시공원	덕양구 행신동 772		4대
47	일산-A-313	도시공원	일산동구 장항동 906	일산동구 호수로 595	5대
48	일산-A-314	도시공원	일산동구 장항동 906	일산동구 호수로 595	5대
49	일산-A-315	도시공원	일산동구 장항동 906	일산동구 호수로 595	5대
50	일산-A-316	도시공원	일산동구 장항동 906	일산동구 호수로 595	5대
51	일산-A-317	도시공원	일산서구 탄현동 1611		5대
52	일산-A-318	도시공원	일산서구 대화동 2316	일산서구 대수길 31-5	4대
53	일산-A-319	도시공원	일산서구 대화동 2337	일산서구 대화로 355	4대